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12조의2제1항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6 신설)

나. 법 제12조의2제3항의 손실보상의 지급 신청 절차를 정함
(안 제4조의7 신설)

다. 법 제12조의2제5항의 손실보상금의 환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8 신설)

라. 법 제12조의3의 이의신청의 처리 기간을 정함(안 제4조의10 신설)

마. 법 제12조의4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정함(안 제4조의11 신설)

바.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12, 별표2 신설)

사. 법 제12조의5제3항의 정보를 제공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13 신설)

아. 법 제12조의6제3항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14 신설)

자. 법 제28조의 권한 등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부터 제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2.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조치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를 의미한다.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 평가 또는 조사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8(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③ 그 밖의 환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9(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① 심의위원회는 급속한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의10(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추가 확인 필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 통지가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11(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국세청·질병관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2.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⑪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⑫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12(정보의 요청)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4조의13(정보의 제공) 법 제12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손실보상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14(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6제3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담조직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의 집행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에 관한 업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관련 정보의 확인 및 검토에 관한 업무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의 확인

2. 손실보상금의 신청·이의신청 서류 접수 및 신청 서류의 형식요건 검토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6호에 따라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4조의12 관련)

1.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 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과세·환급 자료
 -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자료 및 신용카드매출 자료
2.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자료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3. 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6(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u>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u>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u> 2. <u>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u>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조치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를 의미한다.
<u><신 설></u>	<u>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신청)</u>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 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신 설>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 평가 또는 조사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8(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신 설>

<신 설>

를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③ 그 밖의 환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9(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①

심의회위원회는 급속한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의10(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신 설>

90일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추가 확인 필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 통지가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11(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국세청·질병관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

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2.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⑪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소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⑫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12(정보의 요청) 법 제12조의5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4조의13(정보의 제공) 법 제12조의5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제12조(업무의 위탁) <신 설>

자”란 손실보상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14(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6제3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담조직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관련 정

<신 설>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 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보의 확인 및 검토에 관한 업무

2.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 내지 제 12조의5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의 확인

2. 손실보상금의 신청·이의신청 서류 접수 및 신청 서류의 형식요건 검토

3.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

----- 위탁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급의 집행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에 관한 업

<u><신 설></u>	문 <u>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제2항 본문 및 제6호에 따라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 <u>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u> <u>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u>
<u><신 설></u>	<u>[별표 2]</u> <u>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제4조의12 관련)</u> <u>1.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u> <u>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과세·환급 자료</u> <u>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u>

	<u>영수증 자료 및 신용카드매출 자료</u> 2. <u>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u>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자료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3. <u>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826